

● 제328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 3. 6.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박석 의원(찬성의원 22명)
- 나. 제안일 : 2025. 1.31.
- 다. 회부일 : 2025. 2. 6.
- 라. 의안번호 : 234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대의기관으로써,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디지털 환경을 개선하고 의회의 대응력과 생산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디지털 의정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디지털 의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디지털 시민 참여 활성화, 교육 등에 디지털 의정 관련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관련 재원 확보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2.11. ~ 2025. 2.15.

나) 예고결과 : 없음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수정동의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최현재)

1 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제정안은 과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전문성,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디지털 의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발의된 것임.

2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현황

-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y)에 대한 정의가 아직 법적으로 개념화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제작하거나 도입·운용하는 등 디지털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기술”로 정의되고 있음.
-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¹⁾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연계·분석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 중임²⁾.
- 국회 또한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함³⁾.
-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인사권 독립과 정보공개에 대한 책임성·투명성이

1) 디지털 전환 :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을 말함.

2) 디지털 플랫폼 추진방향 발표(2022. 5.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설치(2022.7.1.),

3) 디지털포용법(2025.01.21. 공포)

요구됨에 따라 의정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서울특별시의회는 선도적으로 2018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원용 내부포털시스템인 의정플러스 도입을 시작으로, 의정활동지원시스템, 입법조사회답시스템 등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현재 15개 의정정보시스템을 운용 중임.

<서울특별시의회 의정정보시스템 현황>

연번	시스템명	시스템 주요 기능	도입년	운영부서 (운영팀)
1	의정플러스시스템	-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원용 내부포털시스템	2018년	
2	의정활동지원시스템	- 의원요구자료 및 행정사무감사자료등 전자적으로 요구·관리	2019년	
3	입법조사회답시스템	- 입안지원, 입법정책, 법률자문등 입법조사내역 전자적으로 회답 및 자료 관리시스템	2019년	
4	의안처리시스템	- 의안등록, 의안제출, 전자연서등 의안접수 후 전자적으로 의안처리를 관리시스템	2020년	
5	전자회의시스템	-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전자적으로 처리 - 전자투표, 의사일정, 안건심의 자료 등	2005년	의사담당관 (의정정보화팀)
6	회의록시스템	- 본회의 및 상임위 전자회의록 및 영상회의록 서비스 제공 - 본회의·상임위(특별)위원회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	2008년	
7	본회의 영상표출시스템	- 본회의시 전광판 영상 표출관리 시스템	2008년	
8	의원메일시스템	- 시의원에게 제공되는 서울시의회 공식 웹메일 서비스	2008년	
9	화상회의시스템	- 비상 상황시 화상연결으로 본회의·상임위를 전자적 운영	2022년	
10	의장표창시스템	- 의장 표창 대상, 표창수여이력 등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2016년	의정담당관 (의정총괄팀)
11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시스템	- 서울시의회 공식 홈페이지	1999년	언론홍보실 (영상미디어팀)
12	아카이브시스템	- 의정활동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 수집·보존하기 위한 시스템	2016년	언론홍보실 (영상미디어팀)
13	시의회전문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공식 홈페이지 및 도서관리시스템	2019년	의사담당관 (의정자료팀)
14	의안비용추계시스템	- 각 의안발의시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추계 및 정보제공	2018년	재정분석담당관 (추계세제팀)
15	시의회 U 신문고	- 서울시의회 민원신청·처리 관리시스템	2013년	현장민원담당관 (현장민원총괄팀)

- 또한, 시민의 의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지방의정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⁴⁾한 바 있으며, 미래 지향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종이 없는 디지털 의정을 추진하고 있음.

3 조문별 검토

(1) 제정안 총괄 개요

- 제정안은 “디지털 의정”에 대한 정의, 디지털 의정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의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재원 확보와 업무의 위탁 등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제정안 구성 및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의회의 디지털 의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방자치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
제2조(정의)	‘디지털 의정’의 용어 정의
제3조(디지털 의정 기본원칙)	의회의 디지털 의정 추진의 5가지 기본원칙
제4조(디지털 의정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의정의 기본방향 및 전략, 의정 분야별 추진정책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디지털의정위원회의 설치)	디지털 의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기구 설치
제6조(위원회의 구성)	11명 위원(의원 5명, 전문가 5명, 공무원 1명), 임기2년, 1회 연임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연 2회 정기회, 임시회는 의장, 위원장 필요시 개최
제8조(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의무
제9조(디지털 시민 참여 활성화)	시민들의 의정 참여 활성화와 관련 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제10조(디지털 의정 정보 보호 등)	개인정보보호 및 디지털 의정을 위한 보호조치
제11조(교육)	의원 및 의회 공무원 대상의 디지털 의정 교육
제12조(재원조달 등)	디지털 의정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서울시장의 지원
제13조(업무의 위탁)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 운영과 정보보호 등의 업무위탁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 근거

4) 디지털 지방의정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주최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주관 박석의원,,2024.12.10)

(2) ‘디지털 의정’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디지털 의정”에 대한 용어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디지털 의정에 대한 법률적·사전적 정의는 없으나, ‘디지털 지방의정’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한 사례는 있음⁵⁾
- 따라서 해당 정의 규정은 자치법규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며, 여러 조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미리 설명하여 줌으로써 조례안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임.

(3) ‘디지털 의정’의 기본원칙(안 제3조)

- 안 제3조는 의회의 디지털 의정 추진 시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한 과학적 의정(제1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연속성 보장(제2호), ▶디지털 의정을 통한 의정 결과의 투명한 공개(제3호), ▶디지털 의정을 통해 시민의 의정 참여 활성화(제4호), ▶디지털 의정의 역기능 방지와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제5호)를 기본원칙으로 함.
- 기본원칙 규정은 조례의 제정 이념이나 정신,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 그 조례의 조문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하는 원칙에 관한 선언적 규정임.
- 일반적으로 조례의 목적규정에서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원칙 규정을 둘 필요는 없으나, 상위법령과 관계없이 제정되는 조례안이고, 디지털 의정의 주요 방향, 정책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표현

5)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모델 정립에 관한 연구(20p.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2.12.)

하며 조례 제정의 이념을 강조한다는데 의의가 있음.

(4) ‘디지털 의정’의 기본계획(안 제4조)

- 안 제4조는 의장에게 디지털 의정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는 디지털 의정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발전방향, ▶정책 목표와 전략, 추진체계, ▶분야별 추진정책 등을 포함함.
- 디지털 의정 정책은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라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고, 목표와 추진전략, 분야별 추진 정책과 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구조화되어야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음.
- 따라서 제정안과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빠르고 폭넓게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기술 관련 환경 변화에 능동적·계획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 시기 단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5) 디지털의정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5조~안 제7조, 안 제14조)

- 안 제5조는 디지털 의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디지털의정 위원회’(이하 “디지털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의 수립, ▶의정 데이터의 관리, 연계·이용, ▶디지털 의정 교육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디지털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 연임은 1회만 가능하도록 했으며, 회의는 연 2회의 정기회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시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디지털의정위원회 개요>

구분	디지털의정위원회(제정안)
구성	11명 이내(서울특별시의회의원 5명, 전문가 5명, 담당 과장 1명)
위원장	1명(의원)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기능	서울특별시의회의 디지털 의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의정 데이터의 관리, 연계, 디지털 의정 교육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기본계획 교육 등)
회의	정기회의 연2회, 임시회 필요시

- 이 밖에 디지털위원회 운영, 위원 수당 등(안 제14조)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 운영의 일반적인 규정을 준용하였음.
- 다만, 의회사무처는 의회 내 다른 위원회⁶⁾ 임기와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상설위원회가 아닌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이는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성격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설치요건⁷⁾에 따라 비상설(안 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6) 정책위원회, 예산정책위원회, 흥보물편집위원회 등의 임기는 1년임.

7)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7.15.>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3.7.24.>

1.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어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상설(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7.24.>

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임.

- 그러나 해당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설위원회가 가능하고, 디지털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등인 디지털 의정 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디지털의정 정보시스템 구축·시민 참여 활성화·교육 등(안 제8조○ 안 제11조)

- 안 제8조는 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의원 및 의회 소속 직원들의 사용 편의 등을 위해 의장이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는 디지털 의정 기반으로 시민들의 의정 참여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개선하도록 하였음.
- 안 제10조는 디지털 의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장의 시책추진과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는 의원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디지털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의회 차원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정 정보시스템 구축과 시민의 의정참여, 개인정보 보호대책, 관련 교육 등이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임.

(7) 재원조달과 업무 위탁(안 제12조, 안 제13조)

- 안 제12조는 디지털 의정 추진을 위한 의장의 재원 확보와 서울특별시장의 행정·재정·기술 지원에 대한 노력을, 안 제13조는 의정 정보시스템, 시민 참여 시스템, 디지털 의정 정보보호,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디지털 의정의 지속·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과 기술 등의 확보가 필수 요소이고,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의정 관련 시스템 구축과 교육 등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관련 사무를 위탁 운영하는 것은 민간의 전문성, 창의성, 다양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의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됨.

4 종합의견

- 제정안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전환 시대에 대비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시민 참여를 위한 디지털 의정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디지털의정위원회의 임기·운영 방식, 조례안의 시행일 등에 대한 의회 사무처의 의견이 있으므로 위원회의 전문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음.

담당 연락처

02-2180-7688

□ 참고자료. 의회사무처 조례안 검토사항

검토사항 (조항)	박석 의원(안)	의회사무처 의견
의정기본계획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의정 기본계획 수립·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의정의 기본방향·중장기 발전 방향 · 디지털 의정 정책 목표 및 추진체계 · 디지털 의정 분야별 추진 정책 	<p>동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시 별도 예산 필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임기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회 년2회, 임시회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회 : 년 2회 원칙 · 임시회 : 의장 및 위원장 요구 또는 재적 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 소집 	<p>① 위원회 임기 2년 → 1년</p> <p>② 의원인 위원이 의원임기만료일 경우 위원회 임기도 만료</p> <p>③ 정기회·임시회 → 비상설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내 타 위원회(정책위, 예산정책위, 편집위 등) 임기가 1년으로 위원회간 통일성 부여 - 의원 임기 만료에 따른 혼란 최소화 - 정기회 지양, 비상설로 임시회 위주 운영
디지털 의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시민참여활성화등 (제8조~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의정정보시스템·구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시민 참여 활성화 - 디지털 정보보호 및 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디지털의정 기반으로 시민참여 활성화 및 시민 편의 증진 노력 · 디지털의정을 수반하는 모든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대책 마련 · 의원 및 공무원 역량강화 위해 교육 실시 	<p>동의</p>
업무의 위탁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의정 효과적 추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디지털 의정 정보보호, 교육 등 	<p>동의</p>
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p>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임기를 고려하여 디지털의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7월1일부터 시행